

공 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- 107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5일

방송통신위원회장

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**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, 제76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,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5)

4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『국세징수법』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5.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

- 가.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, **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%의 가산금이 부과**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,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마.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(www.giro.or.kr)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)

(단위:원)

No.	과태료 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0178190004530001823	정*희	900206-1*****	₩3,862,500	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52
2	0178180004530010877	박*주	751019-1*****	₩2,260,000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 내2길
3	0178180004530010868	신*식	590402-1*****	₩18,000,000	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